

『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선우 의원 외 6명

2. 제안이유

-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·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4~5조)
-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(안 제6조)
- 재정지원(안 제7조)
- 교육 및 홍보(안 제8조)
- 2차 피해 방지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
(예상 비용이 연 1억 원 미만으로 추정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03. 04. ~ 03. 11.) 결과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파급력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지속되는 피해자의 고통 경감을 목적으로 시 차원의 지원을 추가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 사항이 없으며,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, 법률 및 의료지원,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에 일조할 수 있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